



Since 1953

AMCHAM Kor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특별 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은행 및 증권 부문 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개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상호간의 투자와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상의이다. 한·미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속·발전시키고, 양국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800여개 회원사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보고서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governmentaffairs@amchamkorea.org

목차

목차	3
보고서 요약: 주요 결과 분석	5
서론	12
핵심 요약	13
I. 은행업·증권업 공통 현안	15
A.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와의 상호 운용성	15
1. IT 인프라 – IT 망분리 우선순위	15
2. IT 인프라 – 클라우드·AI	17
B.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제도적 유연성 필요	19
1. 실명확인 제도의 개선 우선순위	19
2. 책무구조도	21
3. 임직원 보수체계	22
4. 금융소비자보호법	23
5. 근로제도 – 근로시간 관련	25
6. 근로제도 –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의 노사협의회 대표성	26
7. 외국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제한 규정 적용 제외	27
8. 고객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규정 적용	28
C. 국제통합계좌	29
1. 외국인의 국제/통안채 투자 및 관련 외환거래 제도 개선 협의체 마련	29
2. 국제 등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30
3. 장외채권 15 분 내 보고 의무 완화	31
D. 기타	32
1. 업무위탁	32
2. 교육세	33
II. 은행업 관련 현안	34
A. 외국계 은행 지점의 자본 및 자금 조달	34
1. 본점 자본금 인정기준 마련 우선순위	34
2. 외환건전성 부담금 우선순위	35
3.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의 범위 – 결제목적의 예치금 제외	36
4. 예대율규제	37
5. 외은지점에 대한 채권발행 허용	38
6. 지점의 자금 조달계약 개선 – 본지점 차입한도 폐지	39
B. 외환 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	40

1. 지급등 증빙서류의 간소화.....	40
C. RFI 제도.....	41
1. 외환포지션 한도 관련 규제 완화 우선순위	41
2. 수취은행의 확인의무 완화.....	42
3. 제 3 자 외환거래에 있어 투자전용계정 개설은행과 업무용계좌 개설은행 간 역할 분담 명확화.....	43
D. 기존 규제 사항에 대한 재검토.....	44
1.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 우선순위	44
2.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우선순위	45
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예금보험료 제외 또는 경감	46
III. 증권업 관련 현안	47
A. 인가 요건.....	47
1. 적용 요건의 일관성 우선순위	47
2. 대주주 요건 (신규 추가 인가 및 인가 유지 요건)	48
3. 전문인력 요건: 리스크 기반 비즈니스 모델 접근방식.....	49
4.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장 진입자 육성	50
B.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	51
1. IPO 주관사의 주식 보유 의무 우선순위	51
2.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53
3. DLS 발행인 자격	54
4. 상장증권의 장외거래	55
C. 규제 환경.....	57
1.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조사 및 제재 우선순위	57
2.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aked Short Selling Detection System, "NSDS").....	58
3. 규제 투명성 및 제재 절차.....	59

보고서 요약: 주요 결과 분석

I. 은행업·증권업 공통 현안

항목	주요 현안	세부 내용 및 영향	권고 사항
A.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와의 상호 운용성	IT 인프라 - IT 망분리 우선순위	한국의 망분리 규제는 글로벌 IT 통합 및 신기술 도입을 제약하며, 해외 계열사에 대한 IT 운영관리 업무 위탁 시 금융감독원의 제한적 해석으로 '업무상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클라우드 제공자(CSP)가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망분리 예외로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따른 적용 제한과 세부적이고 정형화된 통제 기준 유지로 실질적 활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임.	전용회선 등 안전성이 확보된 통신망 기반 연결의 경우 망분리 의무 완화 검토 및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의 해외 계열사 위탁 시 업무상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예외 적용 필요. 또한, SaaS 망분리 예외와 동일한 논리를 안전성이 확보된 폐쇄망 또는 전용망 기반의 해외 계열사 단말기 연결에도 적용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과 해설서 상 절차요건 명확화 및 망분리 규정을 보안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기반 접근에 따라 정교화하고 적절한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갖춘 경우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향 검토 필요.
	IT 인프라 - 클라우드·AI	비핵심 업무(예: 회의실 예약 등)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사용에도 복잡하고 중복적 보고 의무 부과로 글로벌 본사 클라우드 배포에 따른 국내지점 도입 일정 지연 및 생성형 인공지능(AI)·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부담 존재. 최근 발표된 금융분야 AI 관련 규제는 인적, 물적 여건의 한계가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는 현실적으로 준용하기 어려움.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승인신고 절차 간소화, 비핵심 업무의 경우 이용 보고의무 면제와 업무 위탁 반기 현황보고 등으로 대체하여 보고 절차 단순화 및 샌드박스 로 지정된 클라우드·SaaS의 경우 재지정 면제 필요.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관련 SaaS 활용에 필요한 보안 요건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인정보 비처리 클라우드 기반 AI 도입 절차 간소화 및 본사 차원의 AI 거버넌스 준수 시 국내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필요.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포함된 AI 관련 과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지침 또한 필요.
B.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제도적 유연성 필요	실명확인 제도의 개선 우선순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상 엄격한 고객 확인 절차(CDD, 고객확인제도)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고유의 실명확인 절차가 존재함. 특히 외국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는 국제 관행과 맞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실명확인 요건 완화 필요: 특금법상 CDD 요건 충족 시 실명확인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 필요 및 금융실명법과 특금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책무구조도	본사 차원의 글로벌 통제 절차를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지점차원에서 별도 통제 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인적·물적 부담으로 작용함.	인적, 물적 여건의 한계가 있는 지점의 현실을 고려하여 본사 차원의 절차를 원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외국계 지점의 실정에 부합한 유연하고 맞춤형 당국의 지침 마련 필요.

항목	주요 현안	세부 내용 및 영향	권고 사항
	임직원 보수체계	성과보수보수지급에 대한 공시 및 보수체계 등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보수체계와 상이하여 국내 계열사에 대한 별도 보수체계 및 절차 수립 요구로 인해 행정적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킴.	법령을 통해 세부적인 산식이나 경직된 요건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임원 보수체계의 투명성, 장기성과 강조 그리고 효과적 리스크 관리 등 원칙 중심의 규제 도입 및 세부사항은 개별 기업에게 재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규제제도 정비 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규제 강화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경우 임직원 명부 작성 및 연락금지 요청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준수 의무가 확대됨. 전문금융소비자 등에 일부 예외가 인정되나, 장외파생상품 등은 여전히 불초청권유 금지 대상에 포함됨. 국내 지점망이 없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기업고객과의 사전 협의 방문 및 고객 요청에 따른 미팅화상 회의가 주요 영업 방식임에도 방문판매 규제로 인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특히 위험감수 능력과 금융상품 거래 경험을 갖춘 전문 금융 소비자 및 기업고객에게도 일반 개인 고객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과도한 부담이 초래됨.	일반금융소비를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으로 구분하여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의 합리적 조정 필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고객의 성격, 거래 목적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부 허용하도록 개선 필요. 사전 협의 및 고객의 명시적 요청에 따른 기업고객 방문 영업의 경우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
	근로제도 - 근로시간 관련	재량근로시간제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는 증권회사의 리서치 애널리스트(RA)에게만 적용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은행부서 직원의 경우 대상이 아님.	재량근로시간제가 가능한 업무 범위 조정을 통하여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투자은행부서 직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및 미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전향적 검토 건의.
	근로제도 -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의 노사협의회 대표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 6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전원을 임명할 수 있어, 비노조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음.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경우에도,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참여법 개정 필요.
	외국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제한 규정 적용 제외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국내 금융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위험회피 목적에 한해 제한되는 반면, 인가된 해외 소재 금융기관(RFI)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기관만 규제를 받는 규제 비대칭이 발생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RFI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 외국인 고객 대상 위험회피 목적 거래 제한 규정 면제 필요.

항목	주요 현안	세부 내용 및 영향	권고 사항
C. 국제통합계좌	고객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규정 적용	한국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규제는 강력한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복합적·국내 중심적 적용으로 인해 글로벌 증권사 및 투자은행의 통합 자산관리 비즈니스 모델 구축확대에 구조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 정보 공유 및 국경 간 데이터 처리 제한으로 인해 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허브 대비 준수 부담과 운영 복잡성이 높아, 글로벌 금융기관의 국내 자산관리 시장 진입 유인이 제한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되, 자산관리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 전문성 수준에 따른 비례적·위험 기반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내부 정보 공유 및 국경 간 데이터 처리 범위에 대한 감독 지침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의 명시적 요청·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 및 목적 제한 요건의 적용 방식이 과도한 운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금융·개인정보 규제 당국과 업계가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의 국제/통안채 투자 및 관련 외환거래 제도 개선 협의체 마련	국내 결제 시스템과 SWIFT/iCSD 등 국제 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부족으로 인한 결제 인프라 분절 발생으로 국경 간 거래에 있어 운영상 어려움 초래.	TF 설치를 통한 결제 인프라 개선 추진, 한은금융망(BOK-Wire+)과 SWIFT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및 한국예탁결제원(KSD)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간 협력을 통해 차액결제 허용 필요.
	국제 등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국제 등을 거래할 경우,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로 인해 원천징수 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발생함.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시에도 외국인투자등록번호(IRC)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 면제 필요.
	장외채권 15분 내 보고 의무 완화	국내 금융기관은 장외 채권 거래 시 해당 내역을 15분 내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절차는 수동으로 이루어져 이는 금융기관에 상당한 부담일 뿐 아니라 국제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주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함.	보고 마감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 완화 필요.
	D. 기타	업무위탁	글로벌 단위로 체결된 동일한 아웃소싱 계약이라 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의 활동이 서로 다른 금융 권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동일 권역 내 기보고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후 보고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함.
교육세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해서만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여, 관련 비용이 공제되지 않거나 특정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함.	교육세 제도의 폐지 또는 과세표준 및 과세방식의 전면적 개선 검토 필요.

II. 은행업 관련 현안

항목	주요 현안	세부 내용 및 영향	권고 사항
A. 외국계 은행 지점의 자본 조달	본점 자본금 인정기준 마련 우선순위	현행 은행법의 경우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자본을 인정하지 않고 영업기금만을 자본으로 의제함에 따라,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외국은행 지점의 영업 및 사업 확장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함.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자본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자본으로 인정하도록 은행법 개정 필요.
	외화건전성 부담금 우선순위	외국인 국채 거래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본점 또는 해외 계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이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포함되어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사 간 차입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외은지점이 RFI 대비 경쟁상 불리한 구조에 놓임.	본점 또는 해외 계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을 외화건전성 부담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의 범위 - 결제목적의 예치금 제외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에 따라 결제 목적의 단기 예치금까지 신용공여 한도 대상에 포함되어, 신용공여 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글로벌 은행의 결제 및 운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함.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신용 위험이 극히 낮은 결제 목적의 단기 예치금을 신용 공여 한도 범위에서 제외.
	예대출규제	외은지점은 예금이 아닌 본점 차입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인해, 가계대출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예대출 상한이 대출 장부 확대를 제한하는 주요 제한으로 작용하며, 이는 국제표준과도 불일치함.	외은지점을 예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서 면제 필요.
	외은지점에 대한 채권발행 허용	상법상 외은지점은 법적으로 채권 발행이 인정되지 않아 자금 조달 수단 다변화가 제한됨.	은행법 및 증권 관련 규정에 원화 및 외화 표시 채권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지점의 자금 조달계약 개선 - 본지점 차입한도 폐지	미화 5천만불 초과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본점 차입에 의존도가 높은 외은지점의 자금 운용 및 사업 확장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 차입 한도의 삭제 또는 대폭 상향 필요.

항목	주요 현안	세부 내용 및 영향	권고 사항
B. 외환 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	지급등 증빙서류의 간소화	표준화된 해외 송금/수령 거래에 대해서도 매 건별 동일한 증빙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 지속 발생함.	표준화된 거래에 대해 반복적인 증빙 서류 제출 면제, 송금 사유 통합 및 간소화와 외환 법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C. RFI 제도	외환포지션 한도 관련 규제 완화 우선순위	외은지점은 글로벌 기준과 달리 낮은 현지 계산 자본(갑기금/을기금)을 기준으로 외환포지션 한도가 적용되는 반면, RFI에는 해당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경쟁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임.	외은지점과 RFI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외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자본금 계산 방식 개선 또는 외은지점에 대해 외환포지션 한도 적용의 예외 인정 필요.
	수취은행의 확인의무 완화	비거주자가 RFI를 통해 원화 결제시, 수취은행은 이 거래가 거주자/비거주자 간 거래임을 알기 어려워 지급 목적 확인 및 한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움.	송금은행으로 하여금 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요청.
	제 3자 외환거래에 있어 투자전용계정 개설은행과 업무용계좌 개설은행 간 역할 분담 명확화	투자전용계정 개설 은행이 제 3자 환전 은행(RFI 포함)으로부터 원화 송금 시 정보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이체를 거부하여 제 3자 환전 시스템 활용이 저해되고 있음.	제 3자 외환거래에서 투자전용계정 개설 은행과 환전 은행 간 자금 이체 촉진을 위한 절차 및 정보 공유 의무 규정 명확화 필요.
D. 기존 규제 사항에 대한 재검토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 우선순위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가 미화 5천만 불 이내로 제한되어, 글로벌 기업들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미화 5천만 불에서 미화 1억 불로 상향 필요.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우선순위	외은지점은 국채 인가만 보유하고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거래 수요가 높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어 혼동 및 불편이 초래됨.	외은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에 대해 통안채 투자매매업 인가 허용(증권사와의 마찰 방지를 위해 해외 투자자와의 거래에 한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예금보험료 제외 또는 경감	외은지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이용이 적음에도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납부 의무가 부과될 뿐 아니라, 예금보험료율(0.18%)이 높고 외화 표시 예금까지 부당하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됨.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납부에서 외은지점을 제외하거나 낮은 요율 적용 및 예금 보험료 요율 경감과 외화 표시 예금에 대한 적용 제외 필요.

III. 증권업 관련 현안

항목	주요 현안	세부 내용 및 영향	권고 사항
A. 인가 요건	적용 요건의 일관성 우선순위	지점의 자회사 전환 등 조직 변경 과정에서 조직 변경 후 본점 유지요건에 대한 특례가 없어 변경 직후 요건 미충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규제상 불확실성이 존재함.	특례 규정이 상이한 구조 변경 시나리오에 걸쳐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법적 프레임워크 개정 또는 명확화 필요.
	대주주 요건 (신규 추가 인가 및 인가 유지 요건)	인가 유지 및 추가 인가 요건으로, 본점이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기준이 글로벌 관행에 비추어 지나치게 엄격함.	“5억 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의 금액 기준 완화 또는 규제 당국이 본점 소재 국가의 제재 체계를 감안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전문인력 요건: 리스크 기반 비즈니스 모델 접근방식	인가 단위별 획일적인 최소 전문인력 요건이 부과되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불필요한 전문화된 사업모델(예: 자기 계산 거래)에도 인력 충족을 강제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진입 장벽이 초래됨.	인가 신청자의 사업 활동에 맞게 최소 인력 요건 평가를 유연하고 조정 및 2017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자에 대한 적용 불확실성 해소 필요.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장 진입자 육성	“시장조성업무 한정”과 같이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국제적 자기 자본 투자 전문회사들이 한국에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고객 자산을 수탁받지 않는 중개업 모델에도 현지 자산 관리/보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장벽이 발생함.	사업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업무 범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특화된 사업 모델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회사의 인가를 허용하고 고객 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모델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프라 요건만을 요구하도록 인가 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B.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	IPO 주관사의 주식 보유 의무 우선순위	청약 미달 상장 공모주식 인수시 주관사에 대한 30일의 처분금지기간 적용: 청약 미달로 주관사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30일 처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주로 중개업무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에게 장기 보유 부담을 초래함.	외국계 주관사가 인수한 주식을 30일 처분금지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외 계열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위 유권해석 수정 요청.
		의무보유 확약 물량 배정 미달 시 주관사 공모주식 의무보유 규정: 의무보유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선배정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관행과 달라 해외 기관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주며 외국계 주관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해외 투자자 배정을 하는 외국계 주관사에 대하여 우선배정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여 글로벌 시장 관행과의 정합성 고려 필요.

항목	주요 현안	세부 내용 및 영향	권고 사항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상장법인 주요 주주에게 주식 처분 계획을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냉각 기간을 강제하고 있어, 이는 한국 블록딜(block deal)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규제 목적(내부자 거래 방지)은 유지하되, 블록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공시 제도의 규제 요건 재검토 필요.
	DLS 발행인 자격	외국 발행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DLS)의 국내 판매 규제가 국내 딜러와 동등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특수목적법인(SPV) 등 비인가 법인이 주로 발행하는 글로벌 관행과 상충함.	발행인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증 또는 담보 제공 등 다른 조치로 보완하여 다양한 외국 DLS 상품에 대한 접근 허용 필요.
	상장증권의 장외거래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 증권의 거래소 거래만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장외거래(OTC Trading)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차입한 증권을 반환하기 위한 매수 등에 장외시장을 활용할 수 없음.	외국인 투자자가 차입한 상장 증권을 대주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의 장외 매수를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 필요.
C. 규제 환경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조사 및 제재 우선순위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공매도 규제 위반과 고의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와 벌금이 부과됨.	고의적인 시장 남용이 아닌 부주의로 인한 위반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공매도 규제 체계 개정 필요. 또한, 최근 공매도 관련 규제 합리화 항목 및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보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 창구 마련 필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도입 후, 재고 가용성 시점의 정확성 및 시차를 둔 외부 대주의 리콜 요청 반영 등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됨.	규제 당국(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과 외국계 금융기관 대표자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대면 회의를 통해 불확실성 및 문제를 신속히 논의 및 해소 필요.
	규제 투명성 및 제재 절차	외국계 금융기관은 언어 장벽 및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및 증권선물위원회(SFC) 회의 참석 제한으로 인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기 어려움.	외국 기관에 답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번역 기간 고려)과 대표자의 자조심 및 증선위 회의 참석 허용, 관련 증빙 자료의 충분한 사전 공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 절차 보장 필요.

서론

한국은 세계적인 기업들, 고학력 인재, 그리고 혁신과 회복력 측면에서 강력한 실적을 보유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사들에게도 중요한 시장입니다.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는 2026년 1월 기준 시가총액 2조 5,300억 달러로 전 세계 거래소 중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¹. 한국의 은행 부문은 시스템 안정성, 디지털 혁신, 견고한 기업고객을 기반으로 외국계 은행들에게 기업금융 및 자산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 국민의 부 창출 지원, 그리고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 한국 자본시장 강화를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는 새 정부의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이 본연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금융부문의 전략적 재편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서,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서의 위상 강화,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주요 미국계 은행 및 증권사들이 겪는 각종 제도적 장애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미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활발히 영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벽은 여전히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 저희 건의 사항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된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저희의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 고려해 주시고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암참은 한국의 경쟁력 제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적의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RHQ) 입지로서의 매력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암참의 연례 경영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수년간 싱가포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선호되는 지역 허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토대로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자본 유입은 인공지능(AI), 생명공학기술, 콘텐츠, 방위산업·항공우주, 에너지 등 현 정부의 경제 비전과 연계된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암참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 특히 ‘우선순위(Priority)’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 및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이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¹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FE) 「2026년 1월 시장통계(Market Statistics – January 2026): 시장자본총액」, 2026. <https://focus.world-exchanges.org/issue/january-2026/market-statistics>

핵심 요약

본 보고서는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가 공통으로 직면한 이슈를 시작으로, 은행과 증권사 각각이 직면한 업계별 이슈를 차례로 다루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모델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적용은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에 소재한 외국 금융 회사들은 종종 국제 기준과 크게 다른 한국 규제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규모 소매 고객 기반을 가진 국내 대형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주로 외국 기관 투자자들, 한국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운영에 부담을 줍니다.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책무구조도와 관련한 쟁점 포함)을 포함한 각종 법규 및 다양한 노동 관련 규제가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들의 실무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금융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기관에 진정으로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규제당국이 외국 금융기관의 전략적 운영 모델을 감안하여, 한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에 있어 유연성을 유지한다면,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 시장 참여가 더 활성화되고,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 기회도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 요건은 글로벌 금융기업의 인공지능(AI)이 기반 혁신을 추진하고 전사적인 통합 운영 체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IT 망분리 요건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기관의 한국지점 및 자회사는 그룹 내 계열사들과 IT 인프라를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지점 및 자회사가 적용 받는 규제의 차이로 전사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 및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접근을 비효율적으로 만들며, 도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IT 인프라 요건도 재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부합할 것입니다.

3. 한국과 해외 금융시장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 제고는 시장 효율성 향상과 한국에 대한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며, 한국의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거래 및 결제 인프라와 글로벌 표준 간의 불일치는, 원활한 국경 간 거래를 저해하고 거래 후 결제 절차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투자 시

장을 주 대상으로 하는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및 국제통합계좌(iCSD 계좌)를 통한 정부의 역외거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지원 및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내 외국계 은행 및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의무 및 운영 절차를 재검토하여, 이들 기관이 동일한 국내 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 역외 경쟁업체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진입 장벽 및 엄격한 사업 유지 요건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특화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제도에 대한 보다 높은 규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제도는 혁신, 다양성 및 자본 시장 성장을 위한 병목현상이 아닌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인허가 기준은 국내 기업들과 사업모델이 매우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엄격한 인가 기준과 구조개편에 적용되는 자격 기준 면제 조항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한국 법인이 포함되는 글로벌 조직 개편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10년간 상당수의 외국계 은행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한국에서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비해 높은 자본 요건과 엄격한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지점들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 규제 집행 관행 검토 및 투명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외국 금융기관의 공매도에 대한 규제 집행은 투명성 부족 및 국제 시장 기준에서 벗어난 집행 관행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인 투자 업계는 시장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희망합니다. 제도적 신뢰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정책 결정 및 방향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공개 협의 절차의 확대 및 해석 지침 발표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 은행업·증권업 공통 현안

A.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와의 상호 운용성

1. IT 인프라 - IT 망분리 **우선순위**

외국계 은행/증권(이하 "외국계 금융회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국내/외국인 기관투자자·법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기관투자자 등에게 조회(일부 송금 기능 포함), DMA(Direct Market Access) 등 일부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DMA 서비스는 전용선을 통하여 이루어져 외부 인터넷망과는 차단되어 있음.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해외 본사 또는 계열사(이하 "해외 계열사")에게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글로벌하게 본사와 동일한 인프라 구조와 IT·보안 정책(이하 "정책") 적용을 통하여 보안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고 있음. 국내 IT부서가 수행하여야 할 전산자원 관리 및 사이버 보안 업무의 범위 및 그 복잡성을 고려하면 국내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국내 IT 인력만으로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업무 위탁은 불가피함. 해외 계열사에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 전산실에 위치한 전산시스템을 해외 계열사의 단말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외국계 은행/증권이 제공하는 일부 제한된 서비스가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체 정보처리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망분리 규제는 해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이며 망분리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는 본사와 전혀 다른 인프라 구조와 정책을 적용하여야 하여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전사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이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적용에 가장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음.

또한, 금융감독원은 해외 수탁자의 단말기에서 국내에 위치한 서버에 접속하는 것에 관하여, (i) 논리적 망분리만 적용된 해외 수탁자 단말기가 다수의 해외 계열사의 서버 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단말기와 국내 전산시스템 간 연결·접속 시 물리적 망분리 규제(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고, (ii)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위탁 계약 이행을 위한 수탁자 단말기와 국내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서버 간 연결·접속은 업무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아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동 시행세칙 제2조의3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²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해외 계열사에 위탁을 통한 국내 IT 관련 업무 수행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²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2025년 6월 10일자 (일련번호: 250019).

최근 금융당국에서 클라우드 제공자(이하 "CSP")가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이하 "SaaS")를 망분리 규제 예외로 명시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점은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다만, 해당 예외 적용이 개인정보(고유 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처리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되고, 동시에 세부적이고 정형화된 정보보호 통제 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중앙집중형·지속적 업데이트 기반의 보안 아키텍처를 전제로 하는 클라우드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최근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환경이 다중계층보안·상시 모니터링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직된 망분리 요건은 보안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금융권 디지털 전환 추진에도 일정 부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건의사항:

- **망분리 의무 적용 완화:** (i) 국내 전산 시스템을 해외 계열사의 단말기 또는 기관 고객 (DMA 증권매매 서비스를 위함)과 전용회선 등 안전성이 확보된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경우 또는 (ii) 내부 업무용 단말기가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 비전자금융망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 등 보안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망분리 의무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망분리 관련 규정은 SaaS 활용을 포함하여 외국계 금융회사 업무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기반 접근에 따라 정교화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정보보호 통제가 갖추어진 경우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망분리 예외 사유 인정:**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의 해외 계열사 위탁 시 해외 계열사 단말기와 국내 전산시스템 간 전용회선 등 안전성이 확보된 통신망을 통한 연결·접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업무상 연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감독원의 해석으로 인하여 불가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금번 SaaS 망분리 예외 추진과 동일한 논리를 기반으로 해외 계열사 단말기 연결이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폐쇄망 또는 전용망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예외 논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및 해설서상 절차·요건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기를 희망함. 이러한 망분리 예외 적용 시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7]에 따른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준수하고 보안상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취할 것임.

관련 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2 조의 3 제 2 항, 별표 7

2. IT 인프라 – 클라우드·AI

외국계 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인가받은 본질적 업무와 무관한 업무(회의실 예약 서비스, 화상회의 서비스 등)를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음.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위탁보고 의무도 별도로 발생함.³ 한편,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이슈로 인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내부망에서 SaaS 및 AI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배포하는 클라우드는 다수의 국제 보안인증을 취득한 클라우드이자 단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중복적이고 복잡한 보고 절차로 인하여 국내지점이 글로벌 클라우드 배포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빈번함. 또한, 이미 타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상용화된 클라우드 제품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차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많은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생성형 AI의 도입은 운영환경 변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어,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샌드박스 지정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AI관련 규제는 인적, 물적 여건의 한계가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는 현실적으로 준용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향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승인 및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림.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와 무관한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클라우드의 경우, (i) 클라우드 이용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정보처리 업무위탁 반기 현황보고 등으로 보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ii) 해당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타 금융회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신청을 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 드림.⁴

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2 조.

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은 SaaS 이용과 관련한 망분리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생성형 AI 이용과 관련한 망분리 요건은 완화되지 않음.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이 실제 SaaS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보안 요건, 적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함. 특히, 기존의 복잡한 보고·심사 절차가 유지될 경우 글로벌 본사와의 기술 배포 일정 및 글로벌 표준 체계 정립에 여전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절차 간소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도입 절차를 간소화해 주실 것과 현행 AI규제를 본사 차원의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준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아울러,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향후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포함된 AI 관련 과제도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무적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2 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 금융감독원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B.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제도적 유연성 필요

1. 실명확인 제도의 개선 **우선순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제도는, 고객이 가명(假名) 또는 차명(借名)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시 본인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제도로서, 종래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금융실명법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는 은행연합회에서 배포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업무해설서”)에 따르고 있으며, 해당 업무해설서에서 정하는 바는 은행 업권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권도 적용받는 사항임. 업무해설서에서는 고객의 유형별로 대면 실명거래 시 확인 및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정 서류 미비 시 단순절차 위반으로 보아 거래금액/건마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인 개인이 아닌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개인이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직접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거래 절차를 지나치게 번거롭게 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직원이 위임장을 받아야 하거나, 공증 제도가 없는 나라의 고객들에게 공증을 요구하는 등의 현행 실명확인 절차는 외국법인 입장에서 그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최근 발표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시장 종합 로드맵에 따르면 저위험 외국 법인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공증 면제, 국내 체류자 위임요건 면제, 비자금계좌 개설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일부 절차 완화가 예정되어 업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다만, 실효성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적용, 자금계좌 개설 시에도 실명확인 절차 완화, 자산운용사가 하위투자자 등을 대신하여 투자운용 지시를 내리는 경우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별·실명확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 이후, 모든 국내 금융기관들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바, 이러한 고객 확인절차를 거쳐 그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명 또는 차명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고객 확인 절차 이외에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까지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다른 해외에서도 예를 찾기 어려운 규제이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⁵.

건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명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또한, 금융실명법 및 특금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국내 법인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의 완화:**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실명 확인 및 위임장과 신분증 내지 기업고객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거하여 적법한 대표자/대리인의 신원이 확인되면 비대면 실명확인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 **외국 법인 고객에 대한 실명 확인 방법의 완화:** 비거주자 외국법인 고객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적용, 자금계좌 개설 시에도 실명확인 절차 완화, 자산운용사가 하위투자자 등을 대신하여 투자운용 지시를 내리는 경우에 자산운용사 대상 실명확인 허용을 통해 절차를 완화. 장기적으로는 (i) 실명법상의 실명확인을 면제하거나,⁶ (ii) 특금법에 따른 고객 확인절차로서 실명확인을 갈음하는 방안.

관련 규정:

- 금융실명법 제 3 조 제 1, 2 항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3 조

⁵ 특히 RFI 제도 도입으로 외국법인 고객들이 RFI를 통하여 외환거래가 허용되는 바, 이러한 RFI는 실명확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금융기관이므로 외국법인 고객들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RFI를 통해 외환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러한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제도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⁶ 참고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3 조는 실지 명의를 열거하면서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라고 하여 자연인인 외국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행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외국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해석론이라 생각됨.

2. 책무구조도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별도로 부과되었고,⁷ 지점장에게는 총괄 관리 의무가 부과됨.⁸

임원에 대한 책무배분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지만, 본사 차원의 글로벌 통제 절차가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지점차원에서의 별도의 통제 절차 운영을 위한 상당한 인적, 물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책무구조도 운영에 있어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성 있음.

건의사항:

외국계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운영에 대하여는 국내 금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인적, 물적 여건의 한계가 있는 지점의 현실을 고려하여 본사 차원의 절차를 원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외국계 지점의 실정에 부합하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관련 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2, 제 30 조의 3, 제 30 조의 4

⁷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2.

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4.

3. 임직원 보수체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2 조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9 조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및, 보수지급에 대한 공시 및 보수체계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다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원보수에 대한 규제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제한적이어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수책정의 자율성 결여:** 관련 규정상 성과보수의 이연지급비율, 이연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고, 모든 보수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개별회사가 그 현황에 맞는 보수기준을 운영할 여지가 없음.
- **글로벌 기관에 대한 운영 부담:** 이러한 엄격한 현지 요건이 글로벌 보수체계와 다른 경우, 글로벌 보수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한국에 있는 계열사에 대한 별도의 보수체계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행정적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킴.

건의사항:

세부적인 사항을 법령상 공식과 엄격한 요건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임원 보수체계의 투명성, 장기성과 강조 및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등의 원칙 중심의 규제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개별 기업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는 방향으로 규제제도를 정비할 것을 건의 드림.

만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어렵다면, 적어도 글로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지 기준을 만들 필요 없이 글로벌 임원 보수체계를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2 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9 조

4. 금융소비자보호법

2023년 7월 11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2023년 10월 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음. 해당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그에 따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체결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 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를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 장내파생상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 지점망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우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기업고객을 방문하거나, 고객의 명시적 요청에 따른 미팅 또는 화상회의 등을 주된 영업 방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바, 이러한 방문판매 규제로 인해 영업행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금융소비자 및 일부 기업 고객의 경우 그 소유자산 규모상 위험감수능력이 있으며, 여러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와의 교섭력도 갖추고 있어 일반 개인 고객과 달리 불완전판매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로 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에 따라 일대일 교섭을 통해 거래조건 협의 등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고객이 구체적인 상품을 정하여 권유 요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음. 특히, 방문판매 규제는 본래 특정 소비자 분야에서 문제되었던 불초청권 및 과도한 대면 영업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기업고객 대상 영업활동은 방문판매 규제가 예정하고 있는 불초청·침해적 영업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며, 규제의 적용 범위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건의사항:

방문판매 규제와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를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으로 구분하여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고객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률적으로 불초청권유를 금지하기 보다는 고객의 성격, 거래 목적 및 거래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일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 협의 또는 고객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고객 방문을 통한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2, 제21조의2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6조의2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5. 근로제도 – 근로시간 관련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적법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시 회사는 現 주 52시간 체제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음.

관련 법령은 재량근로시간제가 가능한 업무 중 하나로 “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금융투자분석”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증권/자산운용사의 애널리스트 (analyst)를 의미한다고 이해가 되고 “투자자산운용”은 투자운용인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등록된 PEF 의 GP 소속 임직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음. 증권회사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research analyst)는 이런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반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은행부서 (investment banking division) 직원은 그렇지 않음.

건의사항: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로시간제가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투자은행부서 직원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청 드림.

더 나아가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58조 제3항

6. 근로제도 –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의 노사협의회 대표성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 6 조는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의 위촉하는 자’로 명시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실무적으로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노동조합원들로 구성되게 됨.

그러나 비록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공존하는 사업장에서는 비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들이 노사협의회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게 됨.

건의사항: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경우에도,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근참법의 개정이 필요함. 이는 대통령 공약 중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03”에서 계약직, 파견직, 사내하청노동자 등의 이해관계도 대변하기 위해 인원비례로 근로자(노동자)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공약과 동일한 취지임. 즉, 직장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임.

관련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7. 외국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제한 규정 적용 제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만 할 수 있는바⁹ 여기서 "일반투자자"는 비거주자 외국인 고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¹⁰ 전문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 역시 국내 금융기관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만 할 수 있음.

그러나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할 때 오로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는 다른 선진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특히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RFI 제도 도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들이 이제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RFI와도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바, 이 경우 일반투자자인 외국인 고객들은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만 할 수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RFI와 거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RFI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은 오히려 RFI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건의사항:

상기 규제의 취지가 고객의 투기적 목적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외국법인 고객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 규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됨.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이 RFI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비거주자 외국인 고객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 제한 규정을 면제하여 주시기를 희망함.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6 조의 2 제 1 항 및 시행령 제 186 조의 2.

¹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5, 6 항 및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8 호.

8. 고객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규정 적용

업계에서는 한국의 고객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헌법적·법적·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 있어 비교적 상세하고 국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복합적 적용은 글로벌 증권사 및 투자은행이 글로벌 통합 자산관리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 내에서 구축하거나 확대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글로벌 자산관리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고객 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감시 기능을 지역 또는 글로벌 단위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수행함.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규제는 내부 정보 공유 및 국경 간 데이터 처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허브와 비교할 때 준수 부담과 운영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이러한 여건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사업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유인을 제한하고 있는 바, 국제적으로 연계된 국내 자산관리 생태계의 형성에 대한 제약이 지속될 경우, 국내 자산관리 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건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라는 핵심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관리 비즈니스 관련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 및 글로벌 금융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보다 조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고객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규제 차별화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자산관리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규제를 보다 비례적·위험 기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인가된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 허용 가능한 내부 정보 공유 및 국경 간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지침 또는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고객이 명확히 요청하고 동의한 자산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의 및 목적 제한 요건의 적용 방식이 과도한 운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규제 당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 및 업계가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의체를 통해 자산관리 관련 데이터 규제 체계를 금융허브 전략 및 글로벌 관행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C. 국채통합계좌

1. 외국인의 국채/통안채 투자 및 관련 외환거래 제도 개선 협의체 마련

그간 여러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국채/통안채 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환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실제 거래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국내 결제시스템과 국제 결제시스템 간의 연계성 부족에 기인함. 따라서 이러한 실무적인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국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인프라와의 연계성을 추진하면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의 금융시장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임.

건의사항:

유관기관들과 국내 시장 참가자들로 구성된 TF를 설치하여 수시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고 이를 토대로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협업하여 한국 국채 결제 시스템의 결제 리스크를 낮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현행 시스템 개선
-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를 고려하고 그들의 거래 및 결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 기관 결제에 있어 차액 결제 도입
- 외은지점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RFI 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통해 한은 금융망 연결 허용
-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RFI의 원화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 금융망과 글로벌 스탠다드인 SWIFT 간의 호환성 확보

2.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투자자")이 얻는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이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됨. 외국투자자가 유로클리어 등 적격외국금융회사(QFI)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2025.2. 법인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삭제되었으나,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실무상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경우 국내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해외펀드는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환급 청구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해외 시장에서는 모든 거래 기록을 보유한 수탁기관이 아닌 거래를 중개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일반적이지 않음. 더욱이 수익자가 추후 환급을 요청할 세금에 대해 중개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위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므로 중개금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건의사항:

외국투자자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채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또는 Legal Entity Identifier (LEI)를 통하여 외국투자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주시기를 요청 드림. 같은 외국투자자가 국채 등을 적격외국금융회사(QFI)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국내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에 차이를 두면 국내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의3 제4항
- 법인세법 제93조의3 제4항

3. 장외채권 15분 내 보고 의무 완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장외 채권 거래 시 그 내역을 15분 내로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¹¹ 이러한 보고 프로세스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의 국채 거래가 활성화되어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국채 거래가 증가되면,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나아가 국채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주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건의사항:

보고 시간을 업무 마감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의 완화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5-9조 제2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5조 제1항

¹¹ 금융투자업규정 제 5-9 조 제 2 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7-5 조 제 1 항.

D. 기타

1. 업무위탁

현행 자본시장법규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위탁에 대해 사전보고 의무를 부과 하면서,¹²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일 권역 내 타 금융투자업자가 기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은행·보험 등 타 권역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기보고한 위탁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에만 사후보고를 허용하고 있음.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 개의 법인에서 전 세계의 지사 및 지점에 적용되는 위탁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내에 둘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이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해외 법인에 위탁하게 될 업무 내용이 국내 진출 타 계열사가 기보고한 위탁 내용과 동일한 건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권역이 상이하여 동일 권역 내 기보고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후보고가 불가함. 기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건의 경우, 위탁 업무가 이미 금융감독당국의 검토를 거친 사안이므로 사후보고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다양한 금융 권역의 선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이유로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권역별 특성에 따라 위탁 가능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업무의 경우 권역에 상관없이 기보고한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보고서를 통해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위탁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재 감독당국의 보고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보고된 업무위수탁 내역을 조회할 수 없어,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 건에 대해서도 신규로 중복 보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보고 내역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중복 보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

¹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2 조 제 1 항 및 시행령 제 46 조 제 1 항.

¹³ 금융투자업규정 제 4-4 조 제 3 항 제 1 호.

2. 교육세

교육세법은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1981년 12월에 5년의 적용 시한을 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6년 12월 적용시한이 5년 연장되었다가 1990년 12월 영구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과세되고 있음.

현행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는 (i)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 및 (ii)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보험업자임. (i)의 경우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액에 부가되는 부가세(surtax)로서 궁극적으로 해당 물품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나, (ii)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뿐 아니라 배당금수익, 유가증권매매익,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익, 고정자산처분익 등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어 소비자에게 전가가 어려움. 즉, 금융·보험업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임.

또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이어서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및 국채거래('26년 이후 적용 예정)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손익의 상계를 허용할 뿐, 원칙적으로 관련 비용의 차감이 허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이자비용 및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이자수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 해당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인건비 및 판관비 등의 비용도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못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음.

건의사항:

국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세임에도 금융 보험업자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세의 폐지 또는 대폭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II. 은행업 관련 현안

A. 외국계 은행 지점의 자본 및 자금 조달

1. 본점 자본금 인정기준 마련 **우선순위**

은행에 적용되는 은행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세법상 각종 건전성 규제 및 세금부과기준 등이 은행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음. 은행법은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외은지점의 영업기금(갑기금과 을기금)을 외은지점의 자본금으로 의제하고 있음.¹⁴ 자본금 대신 영업기금을 기준으로 규제를 받는 결과, 국내의 영업기금의 규모에 따라 영업의 규모가 한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한국에서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한국시장의 발전 및 확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은지점의 설립취지에 배치됨.

예를 들면, 은행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 외은지점의 경우 국내에 보유하는 영업기금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에 큰 제약이 따름.

한편, 외국의 경우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해 주거나,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해 주되 국내의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의 예치의무를 두는 방식으로 국내 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의 자본금 의제 규정 이외에 국내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국내자산 보유의무를 두면서, 그 보유한도를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정하고 있음.¹⁵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본금 요건이 가장 엄격하고, 자본금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한국 영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음.

건의사항:

지점 청산 시 국내 채권자 보호 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은행법 제62조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보완하되, 은행법상 국내에 소재하는 일정한 영업기금에 한정하여 자본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본점의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자본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은행법 제9조, 제62조, 제63조
- 은행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¹⁴ 은행법 제 9 조, 제 63 조 및 시행령 제 26 조.

¹⁵ 은행법 제 62 조 및 시행령 제 25 조.

2. 외환건전성 부담금 **우선순위**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외국인 국채 거래 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국채 거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은지점들로서는 국채 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 바, 이를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서는 본점 또는 해외계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의 증가가 불가피함. 그런데 이러한 단기 차입금 증가는 외환건전성 부담금¹⁶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향후 RFI와 경쟁을 해야 하는 외은지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증가는 경쟁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과도한 단기 외화 차입을 억제하고 외환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외은지점의 본점 또는 해외계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은 관계사간 거래로 실질적으로 만기 조정이 수월하므로 단기 외화 차입 억제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건의사항:

외은지점의 본점 또는 해외계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예금성외화부채에서 제외해 주시어, 외은지점이 외국인 국채 거래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21조의3

¹⁶ 외국환거래법 제 11 조의 2 및 시행령 제 21 조의 3.

3.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의 범위 - 결제목적의 예치금 제외

은행법 제 35 조 및 제 35 조의 2 에 따라,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있음.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 1 조의 3, 은행업감독규정 제 3 조 및 별표 2 에서 정하고 있음. 별표 2 에 따르면, 예치금(특히 금융기관 간 예치금)도 신용공여 항목에 포함되어, 예치금의 성격(단기/장기, 결제목적/운용목적)이나 신용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을 받게 됨. 장기 예치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결제목적의 단기 예치금(특히 해외 결제용 단기 외화예치금)까지 신용공여로 간주함에 따라, 글로벌 은행이 본점 또는 계열사에 결제목적으로 예치하는 자금까지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고 있음. 이는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본래 목적(신용리스크 분산)과 무관하게, 글로벌 금융기관의 결제·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함.

건의사항:

은행법 시행령 제 1 조의 3 제 2 항은,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래 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결제목적의 단기 예치금(특히 해외 결제 등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치금)은 은행의 실질적 신용위험이 극히 제한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행령 제 1 조의 3 제 2 항의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결제목적의 단기 예치금을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은행법 제35조, 제35조의2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4. 예대출규제

예대출 규제는 은행 대출금을 예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개별 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로 알려짐.¹⁷ 한국의 경우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 예대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예대출을 은행권 전체의 건전성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로 사용할 뿐 개별은행 규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은행의 건전성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등 유동성 규제를 통하여 감독하고 있음. 특히 외은지점의 경우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본점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서 예금 기반이 아닌 차입으로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대출 규모의 확대에 큰 제약으로 작용함.

건의사항:

은행의 대출규모의 제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예대출 규제는 예금기반이 약한 외은지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이며, 국제적인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대출 규제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

¹⁷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1475911>

5. 외은지점에 대한 채권발행 허용

외은지점의 경우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다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이 주된 자금 조달원인데, 본지점 차입의 경우 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세법상 여러가지 제약 및 비용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자금조달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외은지점은 한국에서 독립된 법인이 아니어서 상법상 채권발행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외은지점은 은행법¹⁸상 은행으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법인격이 없으므로 발행 능력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국내 금융시장 참여 확대 및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한 금융채 발행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에도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하여도 사채발행을 인정하는 예가 있음.¹⁹ 외은지점의 자본조달수단을 다변화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 (외은지점의 원화채권발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외은지점의 경우 일반 상법상 외국법인의 사무소 또는 지점과 달리, 은행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은행법상 외은지점의 채권발행 근거를 명시해 주시고, 외환거래규정 기타 증권발행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외은지점도 원화 및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은행법 제33조, 제59조
- 상법 제469조

¹⁸ 은행법 제 59 조.

¹⁹ Bank of China 의 뉴욕지점은 2024 년 4 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CHN Dual-Tranche 채권 발행.
(<https://www.bocusa.com/bank-china-new-york-branch-cnh-dual-tranche-notes-issuance>)

6. 지점의 자금 조달제약 개선 – 본지점 차입한도 폐지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 불 초과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²⁰ 이는 과도한 규모의 외화 차입 이후 자금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될 경우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외은지점의 본점차입을 일반 국내은행의 외화차입한도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 즉, 외은지점은 해외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을 하는 바,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시장에서 자본공급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외화차입의 절대적인 금액의 상한을 둠에 따라 국내에서의 영업 확장 및 유동성 확보 필요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음.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자유로운 외화차입으로 인하여 시중은행 등에 비하여 경쟁 우위를 차지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과소자본제도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차입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건의사항: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외환거래규정 제 2-5 조에 의한 외화차입한도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

²⁰ 외국환거래규정 제 2-5 조.

B. 외환 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

1. 지급등 증빙서류의 간소화

현행 외환규제에서는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하고 해외송금 및 수취의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하며, 사후 보고서 제출이 필수적임. 더욱이 표준화된 거래에 대해서도 매 건의 송금 시마다 반복적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함에 따라 외환결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국내 은행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의 구조적 문제와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해외 고객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어렵고, 특히 올해 강화된 수출입 관련 규정으로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는 자료들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였음. 또 수출입 관련 10여 개의 지급사유(외환통계 보고항목)는 고객과 해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구분된 측면이 있으며, 특히 당발송금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과도하게 엄격할 뿐 아니라 예외나 면제 경우가 적다는 문제가 있음.

건의사항:

위와 같은 송금 관련 증빙 서류 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정형화된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통한 반복적 서류 제출의 면제 가능성 확대
- 자주 발생하는 증빙서류 요건에 대한 유형별 매뉴얼 제공
- 지급사유의 통합 및 간소화
- 외국계 기관 대상 특성 고려한 송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 간소화를 위한 외환 법령 유연성 제고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4항 및 제4-2조 제1항

C. RFI 제도

1. 외환포지션 한도 관련 규제 완화 우선순위

국내 은행들의 경우 외환포지션(종합포지션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²¹, RFI에 대해서는 현재 외환포지션 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²². 특히 종래 주로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환거래를 하고 있던 외은지점의 경우, 외환포지션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지점의 갑기금, 을기금, 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만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²³ 매우 낮은 수준의 한도가 적용되고, 이러한 낮은 외환포지션 한도로 인하여 거래가 어려움. 이 경우 많은 비거주자 외국인 고객들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외은지점이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인 RFI로 환거래 은행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국내에서 인가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외은지점으로서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

건의사항:

외환포지션 한도 산정에 있어서의 자기자본 계산 방식을 변경하거나 외은지점에 한하여 외환포지션 한도 산정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외은지점과 RFI가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2 제4항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 제5항 제2호

²¹ 외국환거래법 제 11 조 제 2 항 및 시행령 제 21 조 제 2 호, 외국환거래규정 제 2-9 조 및 제 2-9 조의 2 참조.

²²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 5-2 조에 선물환포지션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²³ 외국환거래규정 제 2-9 조의 2 제 4 항.

2. 수취은행의 확인의무 완화

RFI 제도 도입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원화 결제 거래를 할 경우, RFI는 업무용 원화계좌를 통해 해당 비거주자의 원화 자금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음.²⁴ 현행 가이드라인²⁵에 따르면, 이 경우 거주자가 자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수취은행)이 해당 거래의 원인이 되는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원인 거래가 신고 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은행 외환통계 보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 경우 수취은행 입장에서는 해외로부터 외화 자금이 이체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RFI의 업무용 원화계좌에서 원화 자금이 입금되는 것이어서(한국은행 지준망을 통한 자금이체), 통상적인 국내 은행 간 원화 자금 이체와 그 외관이 동일함. 따라서 수취은행으로서는 이 거래가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외환통계 보고까지 하여야 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 따른 지급인지를 알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상기 확인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큼. 이러한 수취은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RFI 제도를 통한 원화 결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면도 있음²⁶.

반면 이러한 경우 업무용 원화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송금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송금 요청이 있는 경우 그것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 따른 결제라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송금은행이 RFI 및 그 비거주자 고객으로부터 해당 거래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수령하고 이를 통해 해당 원인 거래가 신고 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외환통계 보고까지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훨씬 간편할 것으로 생각됨.

건의사항:

송금은행으로 하여금 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²⁷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²⁴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 3-3 조 제 5 항 제 2 호.

²⁵ 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

²⁶ 이에 더하여 예컨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자금을 차입한 경우, 만일 해당 비거주자가 RFI의 업무용계좌를 통해 원화 자금을 대여해 주게 되면, 업무용 원화계좌가 개설된 송금은행이 곧바로 거주자의 원화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줌으로써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 7-15 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누락한 채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²⁷ 참고로 외국환거래규정 제 2-1 조의 2 제 2 항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미화 5 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하여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바, 송금은행은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 거래에 있어서 지급등을 요청받은 것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임.

3. 제3자 외환거래에 있어 투자전용계정 개설은행과 업무용계좌 개설은행 간 역할 분담 명확화

종래 제3자 외환거래의 허용 및 RFI 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전용계정이 개설되어 있는 은행(이하 “투자전용계정 개설은행”)뿐 아니라, 다른 외국환은행 또는 RFI (이하 “제3자 환전은행 등”)를 통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원화 환전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투자전용계정 개설은행들은, 환전은행 등으로부터 원화가 송금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소유자인 투자자 및 관련 증권 거래에 관한 정보 부족 내지 불일치 등을 이유로 투자전용계정으로의 이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이로 인하여 RFI를 통한 환전을 포함한 제3자 외환거래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제 3 자 외환거래에서 투자전용계정 개설은행과 환전은행 등 간 자금이체에 필요한 절차 및 제공되어야 할 정보 등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D. 기존 규제 사항에 대한 재검토

1.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 **우선순위**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는 미화 5천만 불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외국계 기업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글로벌 기업들은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 자금 관리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만 엄격한 외환규제로 인하여 자금통합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외국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자금통합관리의 한도를 현행 미화 5천만 불에서 미화 1억 불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6호

2.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우선순위

국채통합계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향후 해외 투자자들은, 국채는 물론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 또한 활발히 거래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해외 투자자들이 통안채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외은지점을 통한 거래 역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인가 정책상으로 외은지점은 통안채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이 해외 투자자의 통안채 매매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와 통안채 모두 한국 국가 리스크를 거래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이를 거래하는 국내 금융기관인 외은지점의 경우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통안채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킴.

건의사항:

해외 투자자들의 통안채 매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은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에 대하여 통안채 투자매매업 인가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만일 이러한 통안채 투자매매업 인가로 인하여 국내 증권사의 기존 업무 영역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다면, 외은지점의 통안채 투자매매업 인가를 해외 투자자와의 거래에 한정하여 제한하여 인가를 한다면 그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즉, 이 경우 외은지점들은 해외 투자자에게 통안채를 매매하기 위하여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소싱하게 될 것이므로 외은지점이 국내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예금보험료 제외 또는 경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금 및 재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거나,²⁸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²⁹ 목적임. 금융기관의 경우, 동 기금 또는 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기업에게 대출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은지점의 경우 사실상 일률적으로 대출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일정 요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³⁰ 그러나 외은지점은 동 기금 또는 재단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아 대출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동 기금 또는 재단에 대한 출금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 제도의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으로 생각됨.

예금보험료와 관련하여, 외은지점에 적용되는 예금보험료 요율은 0.18%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준임. 또한, 외화표시예금은 환리스크가 있어 일반적인 원화예금과 성격이 다르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이상 예금보호의 대상으로서는 부적당하므로, 외화표시예금에 대하여는 예금보험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일본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외화표시예금에 대하여는 예금보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건의사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외은지점은 출연금 납부에서 제외하거나, 외은지점에게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요율의 출연금 납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도록 요청 드림.

예금보험료와 관련하여, 예금보험료 요율의 경감 및 외화표시예금에 대한 적용 제외를 고려하여 주시도록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6조 제3항
-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7조 제3항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²⁸ 신용보증기금법 제 1 조, 기술보증기금법 제 12 조 제 1 항.

²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1 조.

³⁰ 신용보증기금법 제 6 조 제 3 항, 기술보증기금법 제 13 조 제 3 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7 조 제 3 항.

III. 증권업 관련 현안

A. 인가 요건

1. 적용 요건의 일관성 **우선순위**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룹 구조조정이나 국내 사업 확장 등 이유로 기존에 국내에 진출한 회사의 조직형태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일부 인가 요건의 공백 및 특례 적용의 불일치로 인해 국내 조직형태의 변경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본점 자격 요건에 대한 특례는 지점이 본점을 동일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조직변경이 완료된 이후 본점의 유지요건(본국에서 최근 3년간 5억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기존 지점의 본점 변경 시에는 특례를 적용 받아 본점 변경이 가능하나, 본점을 변경하자마자 그 새로운 본점이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외국계 지점 본점의 유지요건(본국에서 최근 3년간 5억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도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아래 2번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음.

건의사항: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특례를 적용받아 본점을 변경하자마자 새로운 본점이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권해석 또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관련 법체계를 수정 또는 명확히 하여 특례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2. 대주주 요건 (신규 추가 인가 및 인가 유지 요건)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 중 대주주 요건으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 규정³¹되어 있음.

또한, 관련 금융투자업 인가 유지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5억 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 규정³²되어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 업무 추가 인가의 대주주 요건에도 해당함³³.

이에 따라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업무를 영위 하던 중 본점이 5억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인가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금융투자 업무를 추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각 나라마다 형사제도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 수준이 차이가 있고, 본점의 규모가 큰 경우 5억 원 이상의 벌금형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5억 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을 대주주 인가유지요건 등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임에도 외국의 형사제도나 벌금부과 관행에 따라서 (i) 국내에 영업중인 외국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유지요건 미충족으로 철수하거나 본점을 계열회사로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ii) 금융투자업 인가를 추가하지 못해 국내 영업을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건의사항: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 중 대주주 요건 관련 인가 유지요건이나 추가인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 “5억 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 요건의 금액기준을 완화해 주시거나, (ii) 금융당국이 인가심사 과정이나 인가유지요건 판단 시 본점 소재 국가의 형사제도나 벌금부과 사유/수준 등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관련 규정:

³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2 항 제 1 호 나목, 시행령 제 16 조 제 2 항 제 1 호 및 [별표 2] 제 4 호 라목

³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 항,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

³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2 항,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2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의2 제2호, [별표 2] 제4호 라목

3. 전문인력 요건: 리스크 기반 비즈니스 모델 접근방식

인가 단위별 최소 전문인력 요건은 인가 기준의 객관성 증진 차원에서 2017년 3월에 관련 규정에 명시되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 기계적/획일적 규정방식으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할 때 관련 요건 충족에 비합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 규정은 인가 신청자의 사업모델에 필요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가 단위별로 일정 수의 전문인력을 한국에 상근하는 임직원으로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고객에 대한 아무런 권유 없이 거래소 시장에서 ETF를 자기 계산으로만 거래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인가 신청자의 의도된 사업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기계적 전문인력 요건 적용은 인가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며 혁신적이거나 전문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한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함. 많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은 인력 요건을 인가 신청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모델에 부합하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적절한 경우 한국 상근 임직원 채용 대신 인근 지역(예: 범아시아)에 근무하고 있는 계열사 임직원도 인가 요건 심사 시 전문인력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전문인력 요건이 규정에 명시된 2017년 3월 이전에 인가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3월 이전에 받은 인가에 특정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해당 조건의 변경 또는 삭제가 새로운 인가 신청에 해당하여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인가 업무에 대하여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일부 회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음.

건의사항:

현재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인력 요건을 인가 신청자의 사업모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 드림.

또한, 2017년 3월 이전에 받은 인가에 부가된 조건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전문인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유권해석 또는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4.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장 진입자 육성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초점을 맞춘 투자매매업 등 특화된 사업모델을 갖추어 국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에서 기존의 유사한 인가 사례를 감안하여 "시장조성업무 한정"과 같이 업무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의 국내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해외 각국에서 소정의 인가를 받고 자기 계산만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국제적 자기매매전문 금융회사들이 한국에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함. 이 경우 한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투자자에 대한 감독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파생상품시장의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인가 신청에 대하여 감독당국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한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일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는 고객 자금이나 증권 등 고객 자산을 수탁받지 않고 거래를 단순 소개하거나 주선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나, 현행 인가 요건 또는 감독정책 상 관련 전산시스템 없이도 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단순 소개 또는 주선 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운영에 불필요한 비용과 복잡성을 초래하며, 시장 진입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건의사항:

사업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당국에서는 "시장조성 한정"과 같은 업무범위 제한 없이 인가 신청자가 희망하는 인가를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또한, 해외 각국에서 소정의 인가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국제적 자기매매 전문 금융회사들이 한국에서 투자매매업 인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또한, 고객 자산을 수탁받지 않는 사업모델로 인가를 받아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전산시스템 요건 등을 융통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금융투자업자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B.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

1. IPO 주관사의 주식 보유 의무 우선순위

(1) 청약 미달 상장 공모주식 인수시 주관사에 대한 30일의 처분금지기간 적용

투자매매업자 또는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³⁴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위 규정이 인수인이 청약 미달로 상장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고³⁵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반한 인수인을 제재하고 있음.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IPO를 주관하는 경우 청약 미달 등의 사유로 주식 일부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는 주로 국내 투자자와 해외 계열사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재산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이후 장기간 보유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름.

건의사항:

국내 IPO에서 외국계 주관사의 주요 업무는 건전한 유수의 해외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계열사인 해외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공동업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외국계 주관사가 주관사로서 IPO에 따른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0일의 처분금지기간의 예외로서 인수 후 해외 계열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위 유권해석을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

³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1 조 제 7 호 및 시행령 제 68 조 제 5 항 제 4 호 마목, 금융투자업규정 제 4-19 조 제 5 호

³⁵ 금융위원회 2017. 10. 12.자 법령해석 회신문(일련번호: 170265).

(2) 의무보유 확약 물량 배정 미달 시 주관사 공모주식 의무보유 규정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해야 하고³⁶ 의무보유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배정하는 등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배정이 이루어짐³⁷.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해야 하는 선배정 물량을 모두 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모주식의 1% 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무보유해야 함³⁸.

위와 같은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며 건전한 유수의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중개업무를 주로 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 드림.

건의사항:

IPO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자발적 보호예수 확약을 하는 경우가 적고, 해당 확약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부 절차/승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반면, 국내 IPO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global IB와 그룹 차원의 확립된 영업관계로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음. 자발적 보호예수 확약자를 위주로 IPO 배정을 하라는 IPO 관련 최근 개정 규정(KOFIA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이를 관철하지 못하는 주관사에게 한국 감독기관이 규제적 불이익을 준다면 전세계적 관행에 맞지 않는 규제정책이 될 것이므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을 하게 되는 IPO 해외주관사에 대하여는 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14항

³⁶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7 호 가목.

³⁷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3 부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5 의 2.

³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14 항 제 3 호.

2.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2024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거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 그 거래에 관한 사실을 30일 전에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마찬가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미국의 10b5-1 Plan이나 EU의 Master Plan 등이 위법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절차임에 비하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사전 공시 및 냉각기간을 강제함으로써 주요주주의 경영권 주식을 거래하는 Block Deal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건의사항:

이러한 내부자거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과 적용범위를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제1항, 제2항

3. DLS 발행인 자격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 하에서 외국 발행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국내 판매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 국내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다양한 투자 상품 공급이 어려움.

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국내의 투자매매업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 발행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만 국내 판매가 가능한 바³⁹, 해외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은 그 성격상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외국 파생결합증권의 국내 판매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임은 충분히 이해되나, 이러한 투자자 보호는 다른 방안(예컨대, 투자매매업자 발행에 준하는 보증 또는 담보 요건을 추가)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

건의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른 방안(외국투자매매업자의 보증 또는 담보)으로 발행자 요건을 같음하여 다양한 외국 파생결합증권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 5의 2호

³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4 항 5 의 2 호 참조.

4. 상장증권의 장외거래

한국 자본시장은 자본시장 국제화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나, 국내 기간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거래 절차가 적용될 필요성 등이 감안되어,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음.

대표적인 외국인에 대한 추가규제 적용의 사례로는,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⁴⁰ 또는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권의 장외거래가 불가피함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에만⁴¹ 상장증권 장외거래가 허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그 결과 외국인은 개별 건 별로 장외거래 인정 가능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상장증권의 장외거래가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필요한 시점에 거래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외국인의 장외거래 원칙 제한이 외국인 투자한도가 존재하는 일부 상장증권의 외국인 투자한도 준수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제한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정하여 규제해야 할 것임. 하지만, 외국인 투자한도가 없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외국인의 장외거래 원칙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상환 과정에서 내국인 투자자와는 달리 장외시장을 활용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

상장주식을 차입한 외국인투자자가 대주에게 주식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장외거래(이하 "차입한 상장주식 반환을 위한 장외 매수")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아래 방안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열거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 예외 거래로서 "차입한 상장주식 반환을 위한 장외매수"를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

⁴⁰ 금융투자업규정 제 6-7 조 제 1 항.

⁴¹ 금융투자업규정 제 6-7 조 제 1 항 20 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예외사유의 적용 대상을 ‘상장채권’에 국한하지 않고 ‘상장증권’으로 확대

관련 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20호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

C. 규제 환경

1.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조사 및 제재 **우선순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차입 공매도 거래를 하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 또한,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주가조작이나 기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의도한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니터링과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에 대해 중대한 제재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부주의한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한 공매도 규제 위반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위법한 무차입 공매도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훨씬 간소화된 조사 절차 및 낮은 수준의 제재가 취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동성을 촉진시키는 한편 (시장 가격에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즉시 반영되게 함으로써) 적절한 주식 가격이 정해지도록 하는 공매도의 긍정적 영향도 인정되는 것이 필요함.

최근 발표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중 공매도 규제 합리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을 통한 공매도 ID 발급 및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를 통한 일별 거래·잔고 보고 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 일부 보고 의무 및 관리 요건에 대한 합리화·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업계의 실무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창구 마련이 필요함.

건의사항:

부주의한 착오 또는 실수로 발생하였고 고의적인 시장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 규정 위반의 경우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공매도 규제를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또한, 최근 공매도 관련 규제 합리화 항목 및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보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 창구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관련 규정:

- 2025년 3월 31일 시행 공매도 제도개선

2.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aked Short Selling Detection System, “NSDS”)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증권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고 개정된 공매도 규제가 시행된 2025년 3월 31일 이래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옴.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

건의사항:

새롭게 시행된 공매도 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및 이슈를 신속히 논의하고 요구되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담당자 및 외국계 금융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새로운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이슈에는 (i) 매도가능잔고 관련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는 정확한 시점(투자자가 공매도 수탁 증권사에 송부한 모주문과 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자주문 간의 차이 등 관련) 및 (ii) 각기 다른 시간대에 소재한 외부 대주들의 리콜 요청의 적절한 매도가능잔고 반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됨.

관련 규정:

- 2025년 3월 31일 시행 공매도 제도개선

3. 규제 투명성 및 제재 절차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국내에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국내 금융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제재 대상이 된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언어적 장벽과 회의 참석 제한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 및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의견을 피력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됨.

건의사항:

제재 절차의 대상이 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금융감독당국의 정보요청 및 질의들을 적절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됨.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관련 답변을 준비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영문(또는 다른 외국어)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국문 번역문을 작성해야 하므로 추가 시간이 소요됨. 금융감독당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된 외국계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아울러, (i) 외국계 금융기관의 대표자가 자조심 및 증선위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감독당국의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ii) 감독당국의 우려 및 혐의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당국의 주장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정된 자조심 및 증선위 회의일에 앞서 혐의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재 대상인 외국계 금융기관들에 제공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 * * *